
개인보증 사고관리규정 등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개인보증 사고관리규정」, 「개인보증 사고관리 업무처리기준」,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업무처리기준」

2. 개정 이유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4. 10. 17.)에 따른 내규의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관련 사고업무처리방법 신설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심 관련 내용 신설 등

4. 의견제출

-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도착기준)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김이슬 대리(1537@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07
- 팩스번호 : 0505-036-0493

- 붙임 1. 「개인보증 사고관리규정」 전후대비표 1부
2. 「개인보증 사고관리 업무처리기준」 전후대비표 1부
3.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업무처리기준」 전후대비표
1부. 끝.

현행	개정안	비고
제8조(사고처리) ① (생략) ② 사고처리를 한 때에는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사고처리된 경우 사고사유와 무관하게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u>사고업무처리</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고처리)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른 <u>사고처리</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단서이동 및 표현정비
제13조(재산조사) ① 제8조에 따라 사고처리를 한 때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u>즉시</u> 재산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u><신설></u> <u><신설></u> ② ~ ④ (생략) <u><신설></u>	제13조(재산조사) ① 제8조에 따라 사고처리를 한 때에는 <u>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u>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u>추심의 착수 통지를 하고</u> 재산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u>1.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을 사고처리한 경우</u> <u>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추심이 제한되는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을 사고처리한 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이동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재산조사 내용 신설
<u><신설></u>	<u>부칙(7)</u> <u>이 규정은 2024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2. 적용원칙 가. ~ 다. (생략) <u><신설></u>	2. 적용원칙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사고정상화 등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개인금융채권 추심·추심위탁·양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내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 적용원칙 신설
제3장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제3장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제1절 재산조사	제1절 재산조사	
1. 위임규정 <u><신설></u> - 사고관리규정 제14조(재산조사 대상 및 실시범위) 제2항 <u><신설></u>	1. 위임규정 <u>- 사고관리규정 제13조(재산조사) 제5항</u> - 사고관리규정 제14조(재산조사 대상 및 실시범위) 제2항 <u>2. 재산조사 착수 통지</u> <u>가. 재산조사 착수 통지 전에 채권은행을 통해 사고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추심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조사를 포함한 일체의 추심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확인한 결과는 전산에 기록하여 관리한다.</u> <u>나. 재산조사 착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개인금융채권 추심·추심위탁·양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별지3]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착수 안내”에 따라 통지한다.</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재산조사 착수 통지 내용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2. 재산조사 기한 가.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하면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사고처리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u><단서 신설></u> <u><신설></u> <u><신설></u>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3. 재산조사 기한 가. 보증사고사유가 발생하면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사고처리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1) <u>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사고처리된 경우. 이 경우 사고사유와 무관하게 재산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재산조사를 생략한 경우 채권보전조치도 생략한다.</u> (2) <u>사고관리규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심이 제한되는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을 사고처리한 경우. 이 경우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추심제한 대상이 아니게 되면 이를 인지한 때(통지받은 때 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u> 4. (현행 3.와 같음) 5. (현행 4.와 같음) 6. (현행 5.와 같음) 7. (현행 6.와 같음) 8. (현행 7.와 같음) 9. (현행 8.와 같음)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재산조사 내용 신설
제2절 채권보전조치	제2절 채권보전조치	
2. 채권보전조치 시기 － 재산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실시하되,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사고처리기한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u><단서 신설></u>	2. 채권보전조치 시기 － 재산조사결과에 따라 즉시 실시하되,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한 사고처리기한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u>다만, 제3</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보전조치 내용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u>장제1절 3. 가. (2)호에 따라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심제한 대상이 아니게 됨을 인지한 때(통지받은 때 포함)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해야 한다.</u>																							
<u><신설></u>	<u>부칙 (12)</u> 이 기준은 2024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u><신설></u>	<u>[별지3]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착수 안내문</u>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착수 안내 (개인직접보증용) □□□ 귀하 우리 공사는 ○○○님의 부탁에 의해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사가 제공한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공사 「개인보증 사고관리 규정」에서 정한 사고사유의 발생으로 해당 보증이 사고처리된 바, 동 규정에 따른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등의 착수에 앞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지합니다. 1. 보증의 내용 (단위) <table><tr><th>보증구분</th><th colspan="4">(보증상품명) (보증번호)</th></tr><tr><th>보증기관</th><th>채권은행</th><th>보증금액</th><th>사고발생금액</th><th>사고처리</th></tr><tr><td>한국주택금융공사</td><td>##○○은행</td><td>#####</td><td>#####</td><td>####-#</td></tr></table> 2.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착수 예정일: 0000-00-00 3. 공사 담당자 정보<table><tr><td>담당자</td><td>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부서) (##직급)(##성명)</td></tr><tr><td rowspan="2">사무소</td><td>(주소) #####</td></tr><tr><td>(사무실 연락처) ###-####-####</td></tr><tr><td>공사 홈페이지</td><td>www.hf.go.kr</td></tr></table> 4.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착수 방법 - 보증신청 시 제출서류 및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부상 자료의 열람등을 통해 확인된 소유재산에 대해 실익을 검토하여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조치 실시	보증구분	(보증상품명) (보증번호)				보증기관	채권은행	보증금액	사고발생금액	사고처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	#####	####-#	담당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부서) (##직급)(##성명)	사무소	(주소) #####	(사무실 연락처) ###-####-####	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착수 안내문 별지 신설
보증구분	(보증상품명) (보증번호)																							
보증기관	채권은행	보증금액	사고발생금액	사고처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	#####	####-#																				
담당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속부서) (##직급)(##성명)																							
사무소	(주소) #####																							
	(사무실 연락처) ###-####-####																							
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5.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 채권추심자에 대한 신분확인 증표 제시 요구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시
-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사는 당 신용보증 관련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업무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 ▶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 채무자의 가족·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
 - ▶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 실시
 - ▶ 채무대납의 제의 또는 대부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 권유
 - ▶ 현금의 수령 또는 채권추심자 본인 계좌로의 입금 요구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십시오.

6.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소멸시효란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환 조건으로 원금감면 등을 권유하는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통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십시오.

7. 법령 등에서 정한 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 (채무조정)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 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귀하는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귀하는 채권자와 채권의 존재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권은행의 요청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을 하는 경우에 별도 안내

현행	개정안	비고
	9. 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공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 공사는 귀하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2. 용어의 정의 가. ~ 카. (생략) <u><신설></u>	2. 용어의 정의 가. ~ 카. (현행과 같음) 다. “추심”이란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개인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재 파악, 재산조사, 변제 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신설
제2장 사고관리	제2장 사고관리	
4. 사고정상화 가·나. (생략) 다. 사고처리된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 본인에게 사고발생 내용을 통지(전신 또는 DM)함으로써 사고사유 해소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정상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u><단서 신설></u>	4. 사고정상화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고처리된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 본인에게 사고발생 내용을 통지(전신 또는 DM)함으로써 사고사유 해소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정상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u>다만, 통지 시 사고발생 사실 외 추심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장을 준수해야 한다.</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 내용 신설
제3장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제3장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1. 재산조사 실시원칙 <u><신설></u> 가. 이 기준 제2장 제2호(보증사고사유 및 사고처리기한) ‘가’ 및 ‘나’에 의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한 때에는 <u>전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서 신설></u> <u><신설></u>	1. 재산조사 실시원칙 가. 재산조사 업무는 <u>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u> 나. 이 기준 제2장 제2호(보증사고사유 및 사고처리기한) ‘가’ 및 ‘나’에 의하여 보증사고처리를 한 때에는 <u>모든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u> (1) <u>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이 사고처리된 경우. 이 경우 사고사유와 무관하게 재산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재산</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재산조사 내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비고
<u><신설></u> <u>나.</u> (생략) <u>다.</u> (생략) <u>라.</u> (생략) <u>마.</u> (생략)	<u>조사를 생략한 경우 채권보전조치도 생략 한다.</u> (2) <u>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추심이 제한되는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을 사고처리한 경우. 이 경우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추심제한 대상이 아니게 되면 이를 인지한 때(통지받은 때 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u> <u>다.</u> (현행 나.와 같음) <u>라.</u> (현행 다.와 같음) <u>마.</u> (현행 라.와 같음) <u>바.</u> (현행 마.와 같음)	
2. 재산조사의 기한 및 범위 가. 재산조사 기한 (1) 보증사고사유가 발생되면 이 기준 제2장 제2호(보증사고사유 및 사고처리 기한)의 '가' 및 '나'에서 정한 각 사고처리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2. 재산조사의 기한 및 범위 가. 재산조사 기한 (1) 보증사고사유가 발생되면 <u>위 '1. 나. (1)·(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u> 이 기준 제2장 제2호(보증사고사유 및 사고처리 기한)의 '가' 및 '나'에서 정한 각 사고처리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정의 재산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재산조사 내용 신설
3. 채권보전조치 가. 일반원칙 (1) (생략) (2) 채권보전조치는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실시하되, 이 기준 제2장 2.(보증사고사유 및 사고처리 기한) '가' 및 '나'에서 정한 처리 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u><단서 신설></u>	3. 채권보전조치 가.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채권보전조치는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즉시 실시하되, 이 기준 제2장 2.(보증사고사유 및 사고처리 기한) '가' 및 '나'에서 정한 처리 기한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u>다만, 제3장 '1. 나. (2)호'에 따라 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심제한 대상이 아니게 됨을 인지한 때(통지받은 때 포함)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보전조치를 완료해야 한다.</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보전조치 내용 신설
제5장 신용회복지원협약 관련 업무처리방법	제5장 신용회복지원협약 관련 업무처리방법	
2. 채무조정 신청사실 통지시 가·나. (생략) 다. 재산조사	2. 채무조정 신청사실 통지시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재산조사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보전조치 내용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u>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산조사범위에는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채무자 신고서” 등에 의해 발견된 재산을 포함한다.</u> 라. <u>채권보전조치 및 구상권관리</u> (1) (생략) (2) 다만, 채무조정 신청 당시 소유 재산의 고의 신고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경우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가능하므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	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u>사고처리와 무관하게 재산조사를 생략한다.</u> 라. <u>채권보전조치</u> (1) (현행과 같음) <u><삭제></u>	무자보호법」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재산조사 내용 변경 및 채권보전 조치 내용 삭제
<u><신설></u>	제7장 채무조정 업무처리방법	
<u><신설></u>	1. 채무조정제도 <u>“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내용 신설
<u><신설></u>	2. 채무조정안 확정시 <u>채무조정에 따라 보증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보증상품별 업무지침에 따라 조건변경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정시 업무처리 방법 신설
<u><신설></u>	3. 채무조정 효력상실시 가. 사고처리 <u>채무조정 요청에 대한 기각, 각하, 반송, 승인취소 또는 채무조정안 확정 후 효력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장 2. ‘가.’ 또는 ‘나.’에 의거 업무</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상실시 업무처리

현행	개정안	비고
	<u>처리한다.</u> <u>나. 재산조사</u> <u>사고처리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조사를 실시한다.</u> <u>채무조정 효력상실 후 사고처리한 경우 : 제3장 '2. 가. (1)호'에 의한 재산조사 실시</u> <u>채무조정 효력상실 전 사고처리한 경우 : 제3장 '1. 나. (2)호'에 의한 재산조사 실시</u> <u>다. 채권보전조치 및 구상권관리</u> <u>재산조사 결과 채무관계자의 소유재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상실의 유무를 검토하여 제3장 '3. 가. (2)호'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u>	방법 신설
<u><신 설></u>	<u>4. 보증채무이행</u> <u>가.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어 보증채무이행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4장에 따라 보증채무이행청구 업무를 실시한다.</u> <u>나.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채무감면이 이루어지면 공사는 감면된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u>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상실 시 보증채무 이행 업무처리 방법 신설
<u><신 설></u>	<u>부 칙 (20)</u> <u>이 기준은 2024년 1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부칙 신설